

소 화 기

1.1) 일반 사항

1.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소방 관련 법규에 따른다.
(소방법, 소방법 시행령, 소방 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
2. 재료 사용에 있어 제규정에 적용받은 때에는 그 규정에 적합하거나 또는 감독관 사용 승인을 득한후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1.2) 소화기 설치 기준

1. 소방 대상물의 용도에 따라 적합한 종류의 것으로 한다.
2. 수동식 소화기는 각 층마다 설치하고, 소방 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수동식 소화기까지의 보행 거리가 소형 수동식 소화기에 있어서는 20m, 대형 수동식 소화기에 있어서는 30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한다.
3. 통행 또는 피난에 지장이 없고, 사용시 쉽게 취급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4. 수동식 소화기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곳에 비치하고 “소화기” 라고 표시한 표지를 보기 쉬운곳에 게시한다.
5. 아파트로서 11층 이상의 주방에는 자동식 소화기를 설치한다.
6. 이산화탄소 또는 할로겐 화합물(HALON 1301은 제외)을 방사하는 소화기는 지하층, 무창층 또는 밀폐된 거실 및 사무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m² 미만의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단, 배기를 위한 유효한 개구부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피난 기구 설비 공사

1.1) 일반 사항

1. 본 시방서에서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소방 법규 규정에 따른다.
(소방법, 소방법 시행령, 소방기준기술에 관한 규칙)
2. 재료 사용에 있어 제규정에 적용받은 때에는 그 규정에 적합하거나 또는 감독관 사전 승인을 득한후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3. 본 설비 공사에 사용하는 기계류 및 재료는 소화 설비 작동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구조 또는 재질로 한다.

1.2) 설치 기준

1. 피난 기구는 계단, 피난구 기타 피난 시설로부터 적당한 거리에 있는 안전한 구조로 된 피난 또는 소화 활동상 유효한 개구부에 고정하여 설치하거나 필요한 때에만 신속하고 유효하게 설치할 수 있는 상태에 둔다.
2. 피난 기구를 설치하는 개구부는 서로 동일 직선상이 아닌 위치에 있을 것. 다만, 미끄럼봉, 피난교, 피난용 트랩, 호텔 객실에 설치되는 피난 밧줄 또는 간이 완강기 기타 피난상 지장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소방 대상물의 기둥, 바닥, 보 기타 구조상 견고한 부분에 볼트 조임, 매입, 용접 기타의 방법으로 견고하게 부착한다.
4. 4층 이상의 층에 피난 사다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급속성 고정 사다리를 설치하고, 당해 고정 사다리는 쉽게 피난할 수 있는 구조의 노대를 설치한다.
5. 완강기는 강하시 로프가 소방 대상물과 접촉하여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6. 완강기의 미끄럼봉 및 피난 로프의 길이는 부착 위치에서 지면 기타 강착면까지의 길이로 한다.
7. 미끄럼대는 안전한 강하 속도를 유지하도록 하고, 전락 방지를 위한 안전 조치를 한다.
8. 구조대의 길이는 피난상 지장이 없고 안전한 강하 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이로 한다.

9. 인명 구조 기구는 층수가 7층 이상인 관광 호텔 및 5층 이상인 병원에 설치 하여야 한다. 다만, 병원의 경우에는 인공 소생기를 제외한다.
10. 인명 구조 기구는 방열복, 공기 호흡기 (보조 마스크 포함) 및 인공 소생기를 각 2개 이상 비취하여야 한다.
11. 화재시 쉽게 반출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비취한다.

1.3) 완강기의 구조 및 성능

1. 완강기는 안전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사용자가 타인의 도움없이 자기의 몸무게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연속하여 교대로 강하할 수 있는 기구이어야 한다.
2. 완강기는 속도 조절기, 속도 조절기의 연결부, 로우프, 연결 금속구 및 벨트로 구성되어야 한다.
3. 속도 조절기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 1) 견고하고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 2) 정상시에 분해 청소 등을 하지 아니하여도 작동할수 있어야 한다.
 - 3) 강하시 발생하는 열에 의하여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 4) 기능에 이상이 생길 수 있는 모래나 기타의 이물질이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견고한 덮개로 덮어져 있어야 한다.
 - 5) 강하시 로우프가 손상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속도 조절기의 연결부는 사용중에 분해, 손상, 변형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또한 속도 조절기의 이탈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5. 완강기에 사용하는 로우프는 와이어 로우프이어야 하며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 1) 와이어 로우프의 3mm 이상이어야 하며 전체 길이에 걸쳐 균일한 구조이어야 한다.
 - 2) 와이어 로우프에 외장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 길이에 걸쳐 균일하게 외장을 하여야 한다.

1.4) 인명 구조 기구의 종류 및 성능

1. 인명 구조 기구의 종류에는 방열복, 인공 소생기, 공기 호흡기, 산소 발생기, 방연 마스크, 휴대용 로프등이 있다.

1) 방열복 : 고온의 복사열에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내열 피복으로 방열상의, 방열하의 방열장갑, 방열두건 및 속복형 방열복을 말한다.

2) 휴대용 로프 : 길이는 15m 길이로 한다.

1.5) 기타 사항

1. 피난 기구를 설치한 장소에는 가까운 곳에 피난 기구가 있다는 뜻을 표시한 발광식 또는 축광식 표지와 그 사용 방법을 표시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